# 투기과열지구 · 투기지역 ·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

'17.8.2. 주택정책과

# I 투기과열지구(주택법 제63조제2항)

#### □ 지정절차

-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**필요한 경우**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
- □ 지정요건(주택법 제63조제2항)
  - **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**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·주택가격·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
  - **세부요건**(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)
    -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
    -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,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
    -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
      - · 시·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
      - 시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
      - ·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

#### Ⅱ 투기지역(소득세법 104조의2)

- □ 지정요건: [①+②] 또는 [①+③]을 충족하는 경우
  - ① 직전월 가격상승률 >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×130%
  - ②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>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×130%
  - ③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>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
  - 위 요건 충족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**지속될 가능성**이 있거나 **확산될 우려**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# □ 지정절차

○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

# Ⅲ 조정대상지역(주택법, 주택공급규칙 별표)

#### □ 선정기준

- **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**하여 과열이 발 생하였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
- △ 주택가격, 청약경쟁률,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**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**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,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
  - 1)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
  - 2)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,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(투기과열지구 준용)
  - 3)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(투기과열지구 준용)
  - \*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, ②시.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

# 참고 1

# 조정대상지역,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

	조정대상지역	투기과열지구	투기지역
	■ 청약1순위 자격제한 -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지 - 세대주가 아닌 자, 2주택 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■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	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-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+10%p	
기존	■ 전매제한 - 소유권이전등기시(서울, 과천·광명) / 1년6개월(성남) ■ 단기 투자수요 관리 -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,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, 1순위 청약일정 분리 ■ LTV, DTI 10%p 하향 (투기과열지구·투기지역 外)	■ 전매제한 - 소유권이전등기시 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(조합설립인가 후) 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	■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■ 기업자금대출 제한 ■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-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
	■ <b>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</b> -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■ <b>가점제 적용 확대</b> (조정대상	■ <b>주담대 건수 제한</b> - 차주당 1건 → 세대당 1건	
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(8.2 대책)	■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(로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(209) 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- 2주택자 +10%p - 3주택자 이상 +20%p 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-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%로 일괄 적용	■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정비 -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(소유권이전등기시) - 정비사업 분양(조합원/일반) 재당첨 제한(5년) -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■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,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-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	건 이상 보유세대 30% 실수요자 50%
적 <del>용</del> 지역	40개 지역 서울(전역, 25개구), 경기(과천· 성남·하남·고양·광명·남양주·동탄2), 부산(해운대·연제·동래·부산진· 남·수영구·기장군), 세종	27개 지역 40% 석용(구담대고) 27개 지역 서울(전역, 25개구), 경기(과천), 세종	12개 지역 서울(강남·서초·송파·강동· 용산·성동·노원·마포·양천· 영등포·강서), 세종

# 참고 2

## 지역별 적용 효과

# 1. [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아닌] 조정대상지역

지 역	달라지는 점		
경기 6개시	전국 직	역용효과 +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+	
(성남, 하남, 고양, 광명, 남양주, 화성 동탄2)	세제	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(거주요건 추가) 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(50%)	
+ <mark>부산 7개구</mark> (해운대, 연제,	청약	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(+투기과열지구) ■ 가점제 적용 확대(+투기과열지구)	
동래, 수영, 남, 기장, 부산진)	기타	■ 오피스텔 전매제한(소유권 이전등기시) 및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(+투기과열지구)	

# 2. (투기지역이 아닌) 조정대상지역 & 투기과열지구

지 역	달라지는 점		
<mark>서울 14개구</mark> (구로, 금천,		덕용효과 +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+ 기존 투기과열 지정효과 +	
동작, 관악, 은평, 서대문, 종로, 중, 성북, 강북, 도봉,	금융	■ LTV, DTI 40% 적용(+투기지역) 1세대 1건 이상 주담대 가구는 LTV, DTI 30% 적용	
중랑, 동대문, 광진)	정비 사업	■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■ 정비사업 분양분(조합원+일반분양) 재당첨 제한 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	
+ <mark>과천시</mark>	<mark>천시</mark> 기타 ▪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		

# 3. 조정대상지역 8 투기과열지구 8 투기지역 모두 해당

지 역	달라지는 점		
(강남, 저조, 송파, 강동, 용산,	전국 <sup>2</sup> 지정효	적용효과 +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+ 투기과열지구 과 +	
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) <mark>+ 세종시</mark>	금융	■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(세대당 1건)	

## 조정대상지역

성남, 하남, 고양, 광명, 남양주, 동탄 2, 부산(해운대, 연제, 동래, 수영, 남, 기장, 부산진)

## 투기과열지구

서울(구로, 금천, 동작, 관악, 은평, 서대문, 종로, 중, 성북, 강북, 도봉, 중랑, 동대문, 광진), 과천시

# 투기지역

서울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, 용산, 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), 세종시